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I 배경 및 목적

- (배경)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의 불법 유통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혼란 가중
- (목적) 침수차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안전과 피해가 직결된 만큼 침수차에 대한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대책과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II 침수기준 및 정비범위

가. 침수의 정의 및 기준

(정의) 침수차는 플로어 매트(실내바닥)가 침수된 경우부터 정의

(기준) 부분침수란 플로어 매트까지 침수된 경우로 정하고, 완전침수란 플로어 매트부터 엔진(전기차의 경우 구동모터) 상부까지 침수된 경우로 본다.

* 대형화물차, 특수차 등 엔진설치 위치가 캐빈 밑으로 자리 잡은 차량은 미해당

나. 침수기준 및 정비범위

범위	침수기준	침수차 구분	정비범위
내연기관 자동차	부분침수	침수차로 구분하고 정비업자의 정비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보험처리 차량은 보험사가 전손처리 및 분손차량으로 구분	차체 하단 및 실내바닥 부식여부, 제동장치 및 각종 배선(실내바닥과 트렁크바닥, 전기배선 하네스 및 커넥터의 침수 등), 차체,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퓨즈박스, 각종 전장부품 등의 정비
	완전침수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를 점검

범위	침수기준	침수차 구분	정비범위
전기 자동차	부분침수	침수차로 구분하고 정비업자의 정비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보험처리 차량은 보험사가 전손처리 및 분손차량으로 구분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인버터, 고전원전기배선, 차체 하단 및 실내바닥 부식여부, 제동장치 및 각종 배선(실내바닥과 트렁크바닥, 전기배선 하네스 및 커넥터의 침수 등), 차체,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퓨즈박스, 각종 전장부품 등의 정비
	완전침수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를 점검

III 침수차 발생 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침수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침수차 관리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 차량 소유자

내연기관 및 전기자동차

- (부분·완전침수)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구조 및 상태 점검을 요청하여 자동차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고
- (전손처리 차량)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는 30일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나. 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 (자차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전손처리 차량 - 폐차이행확인제 대상

- 보험사는 침수차에 대해 전손처리를 결정한 경우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량 인계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 전손처리 차량 목록을 보험개발원에 전송
- 보험개발원은 전손처리 차량 목록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전송

□ 분손처리 차량

- 보험회사는 전손처리 차량 정보에 준하여 침수 분손차량 정보(보험회사,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를 보험개발원에 전송하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전송
- 분손으로 정정 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본사 승인 필요

다. 자동차정비업자

□ 내연기관 자동차

- (부분침수) 차체 하단 및 실내바닥 부식여부, 제동장치 및 각종 배선, 차체,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퓨즈박스, 각종 전장부품 등의 정비
- (완전침수)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를 점검

□ 전기자동차

- (부분침수)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인버터, 고전원전기배선, 차체 하단 및 실내바닥 부식여부, 제동장치 및 각종 배선, 차체,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퓨즈박스, 각종 전장부품 등의 정비
- (완전침수)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를 점검

□ 정비이력 관리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항목*'을 반드시 체크 후 전송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전송해야 하는 사항 중, [별표 21의4]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에서 외장(D) 9.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해당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작성

- 성능·상태점검 시 자동차 정비이력(자동차 365), 보험이력(카히스토리) 조회 및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침수차로 판단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명확히 기재

- 침수사실 등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마. 자동차매매업자

□ 최종 소비자에게 침수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외에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침수정비이력 등을 확인하여 매수자에게 침수여부를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권고
- 또한,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침수사실 등 거짓 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성능·상태점검보증책임 관계증서 포함)를 제공(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4항)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설명(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 ※ 침수사실 고지의무 미이행 종사원 고용 금지(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4항, '24.8.14 시행)

바.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 개인 및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침수차 피해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침수정도를 고지받은 경우, 특약사항에 침수정도(자동차 실내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향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 사전 차단

□ 침수관련 정보확인 요령

-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침수관련 이력 조회
-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전 소유자의 지역 및 매매시기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해당지역의 자연재해가 없었는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전손처리 차량 - 폐차이행확인제 대상

- 폐차요청 받은 전손처리 차량을 인수한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달 내에 해당 차량을 직접 폐차말소 수행
-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또는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 금지(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전손처리 차량 - 폐차이행확인제 대상

- 보험개발원에서 전송받은 전손처리 차량 목록 중 한달 내 폐차말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해당 자료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 침수차량 이력관리 - 분손처리 차량, 지자체 침수차량 현황 등

- 보험개발원에서 전송받은 분손처리 차량, 지자체에서 파악한 침수차량 정보 등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의 침수여부가 조회될 수 있도록 침수차량 이력 관리

자. 지방자치단체

□ 전손처리 자동차 - 폐차이행확인제 점검

- 폐차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폐차업자에게 행정처분(사업취소·정지) 및 고발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차요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 폐차 전손차량에 대해서는 부활등록 불가

□ 분손처리 차량 및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의 이력관리

- (침수차량 현황 조사) 침수피해사실확인서, 견인조치 차량 현황, 자체 파악 등으로 침수차량 구분 후 국토교통부로 30일내 송부(별첨1 양식 준수)
- (점검 및 정비명령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침수차(폐차 제외)에 대해 정비명령 또는 임시검사명령 시행(자동차관리법 제37조)

- (고지 위반)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비·점검 위반)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는 등 침수차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침수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비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이하)
 - *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차목('24.8.14 시행)
- 정비업자이면서 성능·상태점검자인 경우, 침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행정처분(등록취소·사업정지)

IV 침수차 점검·정비 요령

가. 자동차 소유자 등 일반적 점검 요령(내연기관 및 전기자동차 공통사항)

1. 안전벨트의 흠탕물 흔적 유무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흠탕물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교체 되었다면 의심
2. 실내 냄새 확인
 - 차실내 곰팡이 냄새나 물비린내가 나는지 점검
3. 차량 하부 매트 및 시트하단의 흠탕물이나 진흙 흔적 점검
4. 전기배선 및 퓨즈박스 점검
 - 전기배선과 배선 주위, 퓨즈박스의 이물질이나 흠탕물 흔적이 있거나 신품으로 교체되었다면 의심
5. 등화장치 점검
 - 각종 등화장치의 내부에 습기 흔적이 있다면 확인
6. 도어 스트랩 부분과 트렁크 틈새, 트렁크 플로어 점검

- 해당 부위를 점검하여 흠탕물 여부를 확인

나.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 요령

항목	장치	점검요령	비고
원동기	휘발유, LPG, 경유 등을 사용하여 구동하는 장치	점화·충전·시동 및 흡·배기장치와 관련된 부품의 침수 및 작동상태 확인 후 교체여부 판단	부분침수의 경우 보험사 및 정비사가 자동차의 침수범위를 판단하여 정비 가능여부를 결정
차체 및 차대	자동차의 바디(프레임)	부식여부 점검 후 방청여부 판단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침수여부 및 작동상태를 점검 후 교체여부 판단	
	클러치		
	추진축		
	차동기어장치		
조향장치	조향기어	침수여부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일 및 부품의 교체여부 판단	
	파워실린더		
제동장치	캘리퍼	각종 제동장치 관련 부품의 침수여부 및 작동상태를 점검	
	디스크·드럼브레이크		
	브레이크 호스		
	전자 파킹 시스템		
전기·전자장치	에어백 및 각종 센서	각종 전기·전자장치의 정상작동 점검 및 침수확인 시 교체	
	각종 배선 및 퓨즈 박스		
	ABS 등 각종 모듈		
	전자제어장치(ECU,		

항목	장치	점검요령	비고
	TCU 등)		
승차장치	좌석 및 안전벨트	점검 후 교체여부 판단	
	플로어매트 등	침수여부 점검 후 건조 또는 교체여부 판단	
등화장치	전조등·제동등 등 각종 등화	침수 시 교체	
연료장치	파이프, 호스 등	연료의 누출여부 및 손상·변형에 따라 교체 여부 판단	
	연료탱크		
윤활 및 오일류	엔진 오일	침수수위 및 수분검사 기를 활용하여 교체여 부 판단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공조장치	에어컨 등 공조장치 및 실내 조작장치	점검 후 교체여부 판단	

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비 유의사항

- 현재 생산되는 고전원배터리는 수밀시험*과 침수시험**을 거쳐 자동차에 장착되므로, 수분이 침수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며,

* 수밀시험 : 수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험

** 침수시험 : 소금물에 배터리를 침수시켜 발화나 폭발여부 확인시험

- 침수상황이 발생하여 수분이 배터리에 침투될 경우, 차량 시스템에는 고장코드가 점등되고,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이므로 정비시 각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비매뉴얼에 따라 점검·정비 시행

- 다만, 하이브리드 및 일부 초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는 내부 온도조절을 위한 공기흡입구가 설치되어 침수되는 구조로 확인되므로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 시 고전원배터리 침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초기 생산 고전원배터리	세부 구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플랫폼에 장착되는 고전원배터리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침수상황에도 배터리에 수분이 침투하지 못함 - 침수상황이 발생하여 수분이 침투하더라도 시스템상 전원을 차단하도록 설계됨 	<p>침수시 시스템 내 고장코드 점등시 점검 및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전기차 모델에 장착되었으며 배터리 내부 온도조절을 위해 상부에 공기흡입구가 있어 침수시 배터리 내부로 물이 유입됨 - 배터리 내부로 수분 유입시 전원이 차단되며 배터리는 교체해야 함 	<p>침수시 점검 / 배터리 내부 물 유입시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로 배터리 내부 온도조절을 위해 상부에 공기흡입구가 있음 	<p>침수시 점검 / 배터리 내부 물 유입시 교환</p>

○ 구동모터, 감속기, 인버터, 고전원전기배선

- 각 장치마다 생활방수능력을 갖추도록 제작되었으나, 침수가 발생할 경우 부속품의 침수 우려가 높고, 고전원전기장치 대부분이 상호 결합된 구조이므로, 고장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전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비

라.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의 점검 요령

항 목	세 부 예 시	비 고
실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들하단부 컬럼과 브레이크 플레이트 녹 발생여부 · 실내 악취 (진흙, 곰팡이 냄새) · 침수흔적(내장재 침수흔적) 여부 · 시트 하단 및 실내바닥 물 때 자국, 녹 발생, 들뜸, 교체여부 · 시거잭 내부 및 시거라이터에 진흙, 이물질, 녹 유무 · 실내 볼트류 부식여부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이물질, 흙, 물때 자국, 변색 발생여부, 제조일자 등 확인 · 에어컨필터 상태 및 냄새 확인 	
퓨즈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석 앞 퓨즈박스 내부의 흙과 물때 자국 등 상태 확인 	
도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락 내부 진흙 여부 등 상태 확인 · 도어 내부(진흙, 이물질, 녹 유무) 상태 확인 · 도어트림 탈거 	
엔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 부조 또는 시동꺼짐 (공회전시 RPM 불안정) 	
하체 / 플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로어(밀바닥) 흠칠, 부식여부 · 라디에이터, 냉각쿨러 코어 흠 막힘 · 라디에이터 하부 고정부 이물질 낚 확인 	
트렁크 / 연료주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렁크 밀바닥(플로어) 부식여부 · 연료주입구 진흙 흔적 	
전기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배선 녹(검정색) 발생 여부 등 상태 확인 · 와이어하네스 이물질, 배선 부식 등 · 차량의 보닛(후드)을 열어 ECU(전자제어장치) 및 전선을 교체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 센서 커넥터 흠 탕물 도포여부 / 깨끗하게 닦은 흔적여부 · 범퍼안쪽 전,후방감지 레이터 및 카메라 장착부 이물질 여부와 커넥터 이물질
스페어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 안쪽 부분이나 트렁크 구석구석에 얼룩 	

항 목	세 부 예 시	비 고
	이나 토사물이 묻어있거나 녹이 슬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음	
기 타	·내부 부품중 기능과 관계가 없고, 사고 이력 없이 교체된 경우 확인 : 흡기관, 계기판, 오디오 등	·스캐너상 절연저항값 비정상여부 ·DTC 히스토리 ABS 센서불량 코드 여부
사고이력조회	·자동차365,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침수 등 이력을 조회·확인	·단,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카히스토리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정보만 조회 가능)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들 수 없다. <신설 2024. 2. 13., 시행 2024.8.14.>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시행 2024. 8. 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중(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30일)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신설 2024. 2. 13., 시행 2024. 8. 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중(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30일)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시행일: 2024. 8. 14.] 제80조제6호, 제80조제7호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시행 2024.8.1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 배터리
 - 구동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주행시 전기를 공급하는 부품으로 내연기관의 연료에 해당함
- 구동모터
 -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며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함
- 감속기
 - 모터의 회전수를 필요한 수준으로 낮춰 더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품으로 내연기관의 변속기에 해당함
- 인버터
 -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전원(DC)을 교류전원(AC)으로 변환하여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는 부품
- 고전원전기배선
 - 고전원전기장치에 연결된 배선으로 고전압이 흐름



